

[사 건 명] 행심 2019 - 45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학교에서의 봉사(8시간) 등』 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

피청구인 : ○○학교장

[주 문] 피청구인이 2019. 2.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학교에서의 봉사(8시간) 등』 처분을 취소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가. 청구인 ◇◇◇는 ○○학교 학생이고, 피청구인은 ○○학교장으로, 피청구인
은 2019. 2. 2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 라 합니다) 심
의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피해학생 □□□에 대한 학교폭력 건에 관하여 「학
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
조에 의거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8시간)」 처분
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19. 2. 21.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고서, 이 사건 처분에 이
의가 있어서 2019. 3. 19.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

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보호자는 2019. 2. 11. 이 사건을 처음 알게 되었고, 청구인 보호자는 학부모면담 시 전담기구라는 설명을 받지 못하는 등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따른 절차 설명을 받지 못했고, 증거자료 제출 등에 대한 충분한 시간도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가해자로 규정하고 자치위원회를 진행한 것이고, 전담기구에 참여하였던 교사가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것도 확인되는 바,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

나. 피해학생은 청구인 남자친구의 前 여자 친구로서, 피해학생이 청구인의 인스타그램을 감시하듯이 팔로우를 했다가 풀었다를 반복했고, 2019. 1. 23.에도 피해학생이 청구인의 인스타그램을 팔로우를 했다가 풀었다를 반복해서, 청구인이 이 사건 게시물을 게재하게 된 것으로, 실질적인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청구인이며, 자치위원회는 이러한 전반적인 사건의 맥락을 파악하지 못한 채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자치위원회에서 피해학생 측 주장은 일관성이 없고 과장된 것이며, 피해학생은 청구인에게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사과한다면 용서를 할 수 있다고 희망고문만 하였는데 청구인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SMS 수발신 시간 등을 확인하면 청구인은 원만한 사건해결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기 위해서 방법을 묻는 등 수차례 화해노력을 했음에도 피해학생

측이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사과할 기회도 주지 않은 것이었음에도,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 측 진술만으로 화해의 정도를 낮음으로 판정하고, 청구인이 사과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도리어 피해학생에 대한 위협으로 판단하여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처분까지 하였다.

라. 청구인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대학 수시전형을 위해서 9월에는 생활 기록부를 포함한 입시원서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나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의 대학 입학에 불이익이 있을까 염려되며 청구인은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19. 2. 12. ◇◇◇◇부 담당교사가 청구인과 보호자와의 장시간 면담을 진행하여 보호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며, 자치위원회 절차에 대해서도 안내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같은 날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열어서 그동안의 청구인과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이며, 자치위원회는 교원뿐 아니라 학부모 위원들과 외부 전문가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대한 공정한 입장에서 객관적인 처분을 내리기 위하여 위원들 간의 수평적 의견교환을 통해서 조치를 내렸는바, 청구인의 절차적 하자 있다는 주장은 합당하지 않다.

나. 자치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진술서, 보호자와의 면담 내용 그리고 자치위

원회에서 의견진술 내용 등을 모두 고려해서 조치결정 하였으며, 청구인의 현재 남자친구와 피해학생이 이전에 교제를 했었다는 사실, 피해학생이 인스타그램을 팔로우 했다가 풀었다를 반복한 내용도 청구인의 사전진술서에 포함되어 있어서 자치위원회 위원들은 그 사실을 인지하고 그러한 내용 모두를 포함하여 조치를 내린 것이다.

다. 피해학생이 사과를 요청한 시각은 2019. 1. 24. 20:36경이고, 청구인이 첫 반응을 보인 시각은 2019. 1. 24. 23:39경이며, 중간 중간 연락을 시도했지만 피해학생은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청구인의 화해시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바, 비록 동일한 시간대와 정황이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 심리적으로 격차가 클 수 있으므로 희망고문 하였다는 청구인 측의 주장 역시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라. 자치위원회에서는 사건의 종합적 맥락을 감안하여 심각성 낮음(1점), 지속성과 고의성 없음(0점), 반성정도 매우 높음(0점)을 주었고, 화해정도는 피해학생과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낮음(3점)으로 판단해서 합계 4점으로 산정하고 그에 따라서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로 의결했으며, 제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는 점수와는 상관없이 내려질 수 있는 조치로 피해학생이 청구인 측에서 찾아온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호소하여 내린 조치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2. 판 단

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 자치위원회 위원장은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각 보충서면, 청구인의 확인서 및 경위서, 반성문, 피해학생 확인서, 청구인 및 피해학생 측 자치위원회에서의 각 진술, 청구인 및 피청구인 대리인에 대한 각 구술심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과 피해학생은 모르는 사이였지만, 청구인의 남자친구가 피해학생의 전 남자친구여서, 피해학생이 청구인의 인스타그램을 감시하듯 팔로우를 했다 풀었다를 반복했고, 2019. 1. 23.에도 피해학생이 청구인의 인스타그램을 팔로우를 했다가 풀었다를 반복해서, 청구인은 그날 23:38경 페이스북에 ‘허언증은 약도 없는데 니 인생은 딱 그 정도야 ●●아’ 라는 이 사건 글을 게시했다.

- 2019. 1. 24. 20:36경 피해학생이 청구인에게 ‘공개사과 하지 않으면 신고처리한 거 진행할 거다’ 는 문자를 보내지만 청구인은 ‘학원이다’ 며 나중에 말하자는 취지로 말하고, 그날 23:39경 피해학생에게 연락했지만 피해학생은 청구인의 미온적 대응과 사과에 진정성 없다고 생각하여 이후 청구인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무응답 하였다.
 - 청구인은 이후 수차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SMS 통해서 피해학생에게 사과하려고 했고, 담임교사 등을 통해 사과의사도 전했지만, 피해학생은 받아들이지 않고 2019. 1. 28.경 학교폭력사안으로 신고하였다.
 -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사안 신고 후 학교폭력전담교사, ◆◆◆◆부장은 청구인과 피해학생으로부터 확인서를 받는 등 폭력사건 사안조사 및 상담을 했고, 2019. 2. 11.경 청구인 보호자에게 학교폭력사안에 대한 통지를 하고서 청구인 보호자와도 상담을 진행했으며 2019. 2. 12. 전담기구 구성원으로 참여, 자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2019. 2. 19. 자치위원회에는 재적위원 10명 중 6명이 참석하여 청구인에 관해서 이 사건 처분을 의결했는데, 전담기구 참석자인 ◆◆◆◆부장이 자치위원회 위원으로도 참여 이 사건 처분을 의결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

1) 자치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존재하는 지 여부

가) 관련규정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제1항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고, 제13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며, 제4항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자치위원회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감, 해당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 위원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제3호) 등 일정한 경우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자치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분쟁당사자는 자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3항은 자치위원회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자치위원회 의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1항은 같은 법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

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호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을 비밀로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3항에서 자치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부장이 청구인, 청구인 보호자, 피해학생 측과 각 상담을 실시한 사실, ◆◆◆◆부장이 포함된 ○○학교 전담기구는 청구인, 피해학생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이 사건 자치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 사실, ◆◆◆◆부장은 2019. 2. 19. 이 사건 자치위원회 위원으로도 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을 가해학생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의결한 사실, 이 사건 자치위원회에는 재적위원 10명 중 6명이 참석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앞서 본 학교폭력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자치위원회 위원은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위원에 관한 제척, 기피, 회피제도가 존재하고, 자치위원회 위원의 발언내용을 비밀로 하며 회의록을 공개하는 경우에도 그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도록 하는 등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부장이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과 상담하고 전담기구 구성원으로서 학교폭력 사태에 관한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서 자치위원회 개최를 의결한 지위에 있던 자인 바, ◆◆◆◆부장은 자치위

원회 의원에게 요구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었다고 할 수 없고,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보고, 심의구조에 비추어 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은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000은 0000학교 ◆◆◆◆부장으로 이 사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전담기구 구성원으로서 상담 및 조사를 시행하고도 이 사건 자치위원회 의원으로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의결한 점,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재적위원 10명 중 000을 포함한 6명이 참석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자격이 없는 위원인 000이 참석하였고, 000을 제외하면 출석위원은 5명으로, 재적위원 10명의 과반수(6명)에 미달하여 개의 요건도 충족되지 못한다. 결국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적법한 조치 요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는 이 사건 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치위원회 의결의 주체에 관한 것으로,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